

소요로 인한 화재 손해

이 순 관
(보험감독원 조정역)

1. 사고의 개요

1989년 9월 30일 보험계약자 A와 보험자 B사이에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서울 이문2동 소재의 건물내에 있는 사업시설을 보험목적으로 보험금액은 5천만원, 보험기간은 1989년 9월 30일 16시부터 1992년 9월 30일 16시까지로 하는 장기화재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1991년 8월 13일 16시 경 위 건물 부근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하자 서울 지방 경찰청 소속 C는 지프를 운전하고 위 시위의 진압에 참가하였다가 시위중인 한국외국어대학 학생들이 갑자기 지프쪽으로 몰려와서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파손된 유리창 안으로 화염병을 던져 넣자 C는 당황한 나머지 후방의 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채 시속 약 30~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후진하다가 위 건물 부근에 있던 바리케이드에 지프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프가 갑자기 회전하면서 후진 상태로 인도를 넘어 셔터문이 닫혀진 위 건물에

충돌하면서 건물 안쪽으로 돌진, 지프에서 인화된 화재로 건물 일부 및 시설 등이 전소되었다.

2. 서로의 의견

보험 계약자 A는 본건 장기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자는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험자 B는 약관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다수인의 집단 행동으로 현저히 평온을 해쳐 치안 유지상 중대한 사태),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화재는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위 약관상의 면책 사유에 해당되어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심의

동 사안에 대하여 서울 민사지방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A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험금 지급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대학생들은 단순히 범민족대회 참가를 봉쇄하려는 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하여 화염병을 투척하기에 이르렀고, 그 폭력 행사의 정도도 경찰에 대하여서만 화염병을 투척하였을 뿐이고, 인근의 다른 상가나 행인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폭행이나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시위 장소 또한 지하철 역에서 위 대학교 정문에 이르는 도로에 한정되었고, 다른 지역으로는 확산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한편 위 약관에서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사태하에서는 보험 사고 발생의 빈도나 그 손해 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타당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의 대형화와 손해액의 누적적인 증대로 보험자의 인수 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데에 있다할 것인 바, 본래 보험 제도 자체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우연적·돌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고 발생의 예측 곤란과 피해 극대화를 이유로 하는 면책 사유의 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 열거된 면책 사유중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는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위 대학생들의 폭력 사태는 그 폭력 사태의 발생 경위와 장소 및 당시에 있어서의 폭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건대 한 지방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 기타 유사한 상태’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4. 맷는 글

현행 상법에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 사고가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60조), 각종 손해 보험 약관에서도 전쟁 위험 등은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전쟁 위험 등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대수 법칙에 의한 위험 분산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의 크기를 예측하여 보험 요율을 산출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인 것이다.

본건에서 면책 위험인 소요는 그 규모면에서 폭동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다.

형법 제115조에서는 소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에서 면책 위험으로서의 소요와 형법상의 소요는 반드시 동일 선상에서 같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으나, 현행 약관상으로는 폭동의 경우와는 달리 소요의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소요죄 구성 요건을 참작하여 해석,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소요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중이라 함은 통상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떠한 집단이 다중인가의 여부는 소요의 목적, 성질, 참가자의 성격, 의도, 장소 및 시기 등에 의하여 차이가 나겠고, 몇 사람 이상이라야 한다는 것과 같이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소요는 공공의 안전, 평온을 해하는 것이므로 결국 그 위력으로서 한 지방의 안전·평온을 해할 정도의 사람 수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합이라 함은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집단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조직적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등은 정치적·사회적 목적이나 동기가 뚜렷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소요의 성질에 관하여는 정치적·사회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는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소요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러한 동기, 목적을 불문하고 면책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건 사실 관계에 의하면 약5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범민족대회

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인근에 있는 각지하철 역에서 위 대학교로 몰려가려다 경찰이 위 대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진입을 저지하자 경찰을 향하여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를 시작하였고, 동 시위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으면서 경찰 버스 2대를 불지르고 앞서 본바와 같이 지프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지프차를 불지르는 바람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하는 등 다소 시위가 과격하였던 점은 인정이 되나 한 지방의 평화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지금 판결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영미 화재보험 약관에서는 Riot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Riot는 우리나라에서의 소요와는 달리 소수인 내지 소규모의 폭력 행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특히 외포감(恐怖感)이 상당히 중요한 요건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 판례인 Field V. Receiver of Metropolitan Police (1907)에 의하면 Riot는 다음과 같은 5 항목을 요건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① 3인 이상의 자.
- ② 공통의 목적.
- ③ 공통 목적의 실행 또는 착수.
- ④ 공통 목적의 실행에 있어 반항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힘으로써(by force) 서로 조력할 의도.
- ⑤ 힘 또는 폭력(violence)이 사용될 뿐 아니라, 최소한 상당히 확고하거나 용기있는 1인의 사람을 외포(alarm)케 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 ◎